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11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김성원·유상범·권명호

김승수・최형두・이 용

엄태영 · 정희용 · 이주환

최승재 • 전주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원에게 특별히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우선의 의무,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두고 있음.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의회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선서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추가(안 제24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반영하여 의원선서문에도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안 제25조의2 신설)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문언으로 명문화함.

- 1) 의원은 안건의 심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알면서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문화함.
- 2) 의원이 이해충돌 회피의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 회는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회피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자 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1)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새로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자문위원장은 제1야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제46조의2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
-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고,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함(안 제25조의2제4항, 제4 8조의2제6항 및 제155조).

- 라.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기준(안 제48조의2 신설)
 - 1)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을 하되, 소속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는 선임 요청해서는 아니 됨.
 -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 청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할 수 있음.
 - 3) 의원이 위원장·간사 또는 소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되거나 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하도록 함.
 - 4) 의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준 하여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이해충돌 회피의무) ① 의원은 안건의 심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하 "이해충돌"이라 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청가서(請暇書)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의원은 제1항의 회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

한 경우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회피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5조제6항 중 "제2항을"을 "제2항과 제48조의2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국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 2.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의원의 자문
- 3.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제46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의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교섭 단체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위원 선임 및 개선의 기준)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8조에 따른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요청을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요청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자문 요청을 할 수 있다.
 -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된 후에도 제3항의 자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1. 위원장, 간사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된 때
 - 2.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의원이 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 (주된 소관사항이 동일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활동하게 되는

- 때. 이 경우 4년의 기간은 해당 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한 모든 기간을 통틀어 계산한다.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에 관한 자문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⑦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의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15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5조의2제1항의 회피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때
 - 1의3. 제25조의2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 원회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 체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6조의 의2에 따라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법 시행전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은 이 법 시행 전에도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에 위촉될 자문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할 수 있으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기준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로 한다.

-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기준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u><신</u> 설>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양심에 따라 성실히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선서합니다."

제25조의2(이해충돌 회피의무) ① 의원은 안건의 심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공 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하 "이해충돌"이라 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 조에 따른 청가서(請暇書)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회피의무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5) (생 략)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발생 여부에 관하여 제46조의2 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 항의 자문 요청이 없는 경우에 도 필요한 경우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회피의 무 발생 여부에 대한 자문의견 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 섭단체 대표의원 및 위원장에 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에 필 요한 자료를 해당 의원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지체 없이 따 라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 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 (5) (현행과 같음)

6	 	 	

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 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 ② ~ ③ (생 략)
-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후단 신설>

<u>제2항과 제48조의2를</u>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u>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
<u> </u>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
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
는 의원의 자문
3.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
위원회의 자문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
워자은 소속 의위 수가 두 버

째로 많은 교섭단체의 교섭단

⑤ (생략) <신 설>

⑥ (생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⑥ (생 략)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 <삭 제> 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 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자문위 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현행과 같음)
- ⑥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 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워으로 본다.

⑦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위원 선임 및 개선의 기준)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 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8조에 따른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 요청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 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을할 수 있다.

- ④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 회의 위원이 선임된 후에도 제 3항의 자문 요청을 할 수 있으 며, 소속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윤 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여 야 한다.
- 1. 위원장, 간사 또는 소위원회

 의 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된

 때
- 2.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의원이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주된 소관사항이 동일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서 활동하게 되는 때. 이 경우 4년의 기간은 해당 의원이 의원으로 재직한 모든 기간을 통틀어 계산한다.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에 관한 자문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접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수 있다.
- 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 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문 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의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의원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지체 없 이 따라야 한다.
-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존 중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은 의장이 어느 교섭단체에 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선 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1. (생 략) <u><신 설></u>

<신 설>

2. ~ 16. (생략)

제155조(징계)
<u>.</u>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5조의2제1항의 회피의
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때
<u> 기교인 때</u> 1의3. 제25조의2제4항 또는 제4
8조의2제6항에 따른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체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2. ~ 16. (현행과 같음)